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99

발의연월일: 2021. 10. 21.

발 의 자: 안병길 · 권성동 · 김선교

김태흠 • 류성걸 • 박대수

서일준 • 유의동 • 이종성

조명희 · 최춘식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조류, 파충류, 어류, 양서류까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, 고양이, 토끼, 페릿,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음.

이에 따라 위 여섯 종류 외의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온라인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택배트럭 등에 실려 배송되는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려동물의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사항에 이 법에 따른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국가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반려동물 범위의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범위를 적극적

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1항 제8호 신설). 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 제4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8.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	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
의 책무) ① 국가는 동물의 적	의 책무) ①
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년	
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	
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	
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	
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	
조하여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
	한 사항
<u>6.</u> (생 략)	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)	제45조(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	①
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.	
조사·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	
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	
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
	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
	<u>사항</u>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